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본 조례는 1974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2002년까지 매년 한우 입식자금, 양봉사업, 원예작물재배 자금 등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나. 농가소득 자금지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총괄하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이 있고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어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다. 군의회 임시회(2003. 7. 9)시 의원님들의 군정질의를 통해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은 70년대 새마을운동에 맞는 것으로 현재에는 동 사업이 시대에 동떨어져 효과성이 적은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등으로 2003년부터 융자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2007년과 2008년 군정질의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라. 2002년 마지막 융자지원된 회수금도 2007년 12월말로 상환 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미납분에 대한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미납된 융자금(17건 35,500천원)도 회수 불가능분을 제외하면 완료되어가는 시점이라 당초취지의 사업 목적은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어 특별회계 지원사업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함.

나. 제4장 특별회계지원사업의 삭제

- 제23조 내지 제26조 삭제

4. 검토의견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법령제명의 경우 2004년까지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써 왔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법령의 영향을 받아 그 동안 제명을 모두 붙여서 표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법령제목을 붙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관계로 법제처에서는 2005. 1. 1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법제처에서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이 포함된**「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제명도 이 기준에 따라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조례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맞게 상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특별회계사업의 존치 불필요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 본 조례안의 제4장 특별회계지원사업은

- 그동안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의 등을 통하여 현재는 동 사업이 현 시대에 동떨어져 그 효과성이 적은 제도임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고,

- 친환경농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농가소득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당초 특별회계설치시의 사업목적도 완료된 걸로 볼 수 있어 특별회계 지원사업 관련조항(제23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결론적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옥외광고사업(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수익금중 군으로 배분 되는 수익금
-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다.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라. 기금의 운영관리(안 제4조)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

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안 제5조 내지 제8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성주군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의 구성은 **전문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금의 재원은

- 옥외광고사업(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수익금 중 우리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 그 외 허가·신고시 수수료
- 위반사항 과태료·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도비 보조금
-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 기금의 용도는

- 광고물 등의 정비
- 경관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되며,

○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 앞으로 성주군의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됨으로 사전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 등이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